

10. 법 제46조제1항(법 제49조 및 제52조의2제9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른 준공인가, 같은 조 제3항(법 제49조 및 제52조의2제9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른 공고와 시행자 및 관리청에의 통지 및 같은 조 제5항 단서(법 제49조 및 제52조의2제9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른 사용허가
 - 10의2. 법 제50조의3(법 제52조의2제9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·징수
 11.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물류단지관리계획의 접수
 12. 법 제57조에 따른 관리기관 등에 대한 권고
 13.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물류창고업자에 대한 보고·자료 제출의 명령 및 업무의 검사
 14. 법 제62조제1호에 따른 물류창고업의 등록취소에 관한 청문
 15. 법 제67조에 따른 물류창고업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
-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.<신설 2012. 2. 2., 2012. 11. 27., 2013. 3. 23., 2020. 10. 8., 2022. 7. 19., 2024. 2. 6. >
1. 법 제21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물류창고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
 - 1의2. 법 제21조의9에 따른 물류창고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
 2. 법 제21조의10에서 준용하는 법 제1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물류창고업자에 대한 사업승계의 신고수리 및 신고수리 여부 통지
 3. 법 제21조의10에서 준용하는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의 휴업·폐업 및 법인해산의 신고접수
 4. 법 제21조의10에서 준용하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물류창고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및 사업정지
 - 5.
- [종전 제5호는 제1호의2로 이동 <2022. 7. 19.>]

]

6.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물류창고업자에 대한 보고·자료 제출의 명령 및 업무의 검사
 7. 법 제62조제1호에 따른 물류창고업의 등록취소에 관한 청문
 8. 법 제67조에 따른 물류창고업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
- ③ 시·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업무 중 제1호의2, 제2호, 제4호(사업승계의 신고수리만 해당한다)부터 제6호까지, 제8호, 제10호(준공인가 및 사용허가만 해당한다), 제10호의2 및 제15호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이를 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.<개정 2008. 2. 29., 2010. 8. 11., 2012. 2. 2., 2012. 11. 27., 2013. 3. 23., 2022. 7. 19., 2024. 11. 5. >

제47조의2(규제의 재검토)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(매 3년이 되는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)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6. 12. 30.>

1. 삭제 <2016. 12. 30.>
2. 제18조에 따른 행위허가의 대상 등: 2017년 1월 1일
3. 제33조에 따른 선수금: 2017년 1월 1일
4. 제34조에 따른 시설부담금: 2017년 1월 1일
5. 제42조에 따른 처분제한대상 토지·시설 등의 양도 등: 2017년 1월 1일
6. 제43조의2에 따른 입주기업체협의회의 구성과 운영: 2017년 1월 1일

[본조신설 2013. 12. 30.]

제48조(과태료의 부과기준) 법 제6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.

[전문개정 2011. 4. 4.]

부칙 <제35167호, 2024. 12. 31.>(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령)